##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94

발의연월일: 2022. 4. 26.

발 의 자: 김수흥 · 김경만 · 김교흥

박성준 · 서영석 · 소병철

안규백 • 전용기 • 정일영

황운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꿈꾸는 청 년이 늘고 있음.

이는 지난 1월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2020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가 구 수가 역대 최대치인 1,362가구'라고 발표했듯이 통계상 수치로도 확인되었음.

그러나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40세 미만의 사람(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어

· 귀촌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u>낙후지역 귀농어업인</u> 및	제16조( <u>귀농어업인</u> 및 귀촌인에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생	대한 우대지원) ① (현행 제목
략)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u>년(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u>
	람을 말한다)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
	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
	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
	<u>할 수 있다.</u>